

The Latest Trend in Chinese Product Marking

중국 상품 표시의 최신 동향

Writer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Contents

- I. 상품 표시의 정의
- II. 상품 표시 명시 필수사항
- III. 각종 표준 및 강제성 표준의 표기
- IV. 인증마크의 표기
- V. 품목별 라벨
- VI. 재활용 마크
- VII. 전망 및 시사점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I. 상품 표시의 정의

상품 표시(標識)은 제품 및 그 품질, 수량, 특징, 특성과 사용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는 각종 표시의 총칭으로, 문자, 부호, 숫자, 그림, 기타 설명문으로 구성된 라벨, 마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품표시를 부착(첨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제품의 기본정보를 구매자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② 유통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 ③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품 생산(또는 수입), 운송, 판매 루트를 추적하기 위해서이다.

II. 상품 표시 명시 필수사항

1. 제품의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시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시’은 제품출하 품질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표시이다. 이 표시는 의무적으로 부착(첨부)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 안전성을 보장하는 ‘품질보증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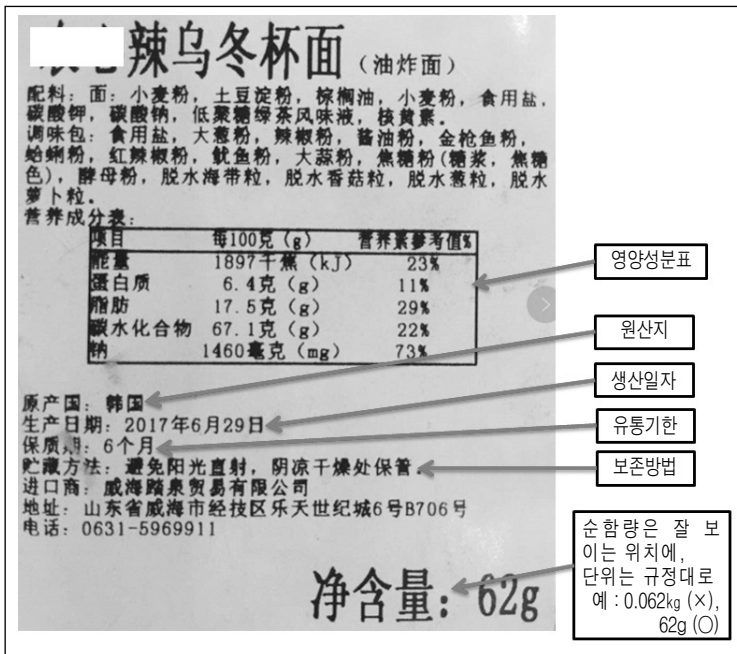
상품과 그 포장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표 1]에 나타난 4가지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첨부해야만 한다.

[표 1]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식 부착 방법

구분	제품 예	부착방식	예시
1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 컴퓨터, 자동차 등	- 포장 내 별도로 합격증 부착 - 일반적으로 설명서에 부착	
2	일반상품 (슬리퍼, 그릇 등)	- 제품 및 포장 외부에 직접 '합격증'을 부착	
3	의류, 신발, 가방 등	- 태그로 제작 - 태그 중 상품 기본정보 외 '합격증'을 포함	
4	화장품, 약품, 건강식품 등	- 포장에 마크 인쇄 - 양식은 무관, '검험합격'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그림 1] 중문라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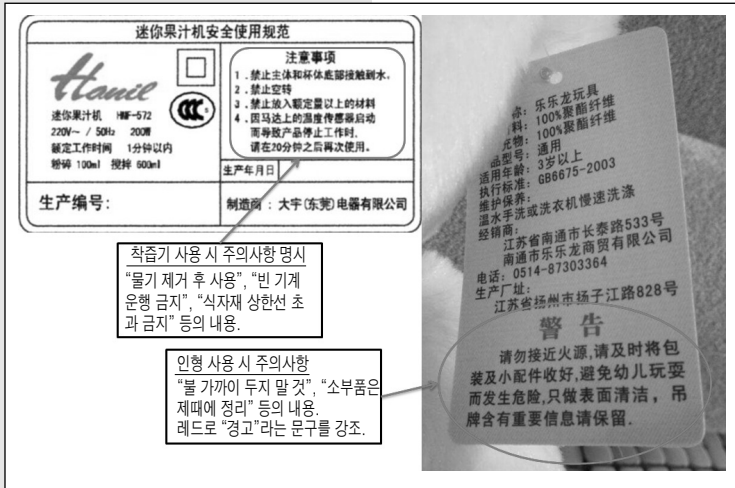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2. 중문라벨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중국산과 수입산을 막론하고 모두 중국어 간체로 다음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① 제품명, 제조업체 명칭(또는 수입업체·대리업체) 및 제조업체 주소 등, 이는 중국 관련 법규상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 ② 제품 특징, 사용 요구에 따라 제품 규격, 등급, 주요 성분 명칭 및 함유량
- ③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있는

[그림 2] 경고문 예시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제품은 눈에 띄는 위치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안전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건강식품, 화장품, 약품, 식품, 음료, 화학공업제품 등은 이에 해당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④ 정량 포장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함량(淨含量)’을 잘 보이는 위치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위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3. 경고문

용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제품이 훼손되거나 인

체·재산 안전을 훼손할 경우에 ‘경고마크’ 또는 중국어 ‘경고설명문’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가연물·폭발물, 독극물·부식성·위험성·방사성 물질 등 특수제품에 대해 보존과 운송·사용과정에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정확한 취급방법, 주의사항 등을 제품 또는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전지·공작기계설비·위험화학물질·완구 등은 라벨·설명서·태그에 ‘고온 주의’, ‘기계 운행 시 손을 넣지 마세요’, ‘3세 미만 어린이가 만질 수 없는 곳에 두세요’ 등 경고마크, 경고 문구(중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무(無)포장제품은 제품

표시가 불필요하다. 중국 제품 품질법은 ‘무포장식품 및 기타 무포장제품(제품 특성에 의해 표식을 첨부하지 않은 제품은 그 특성을 고려해 제품표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각종 표준 및 강제성 표준의 표기

1. 각종 표준의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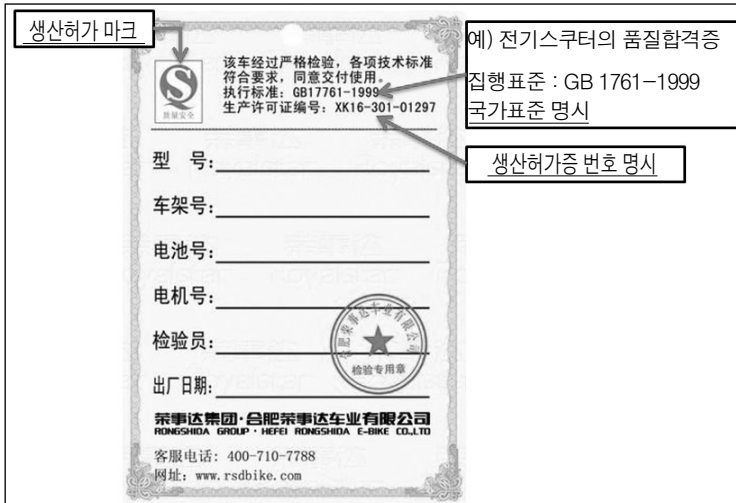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또는 기업기준에 의해 제조한 제품은 설명서, 포장(또는 제품)에 해당 표준의 코드번호,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중국에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등 4가지 표준이 있는데, 기업은 자사제품 관련 각종 표준 번호와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표준화법’)돼 있다.

2. 강제성 표준의 표기

강제성 표준이 있는 적용범위에 있을 경우 반드시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표준 미달의 제품은 ‘불합격제품’으로 분류돼 수입 불허, 판매 금지되

[그림 3] 국가표준 및 생산허가증 명시 사례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기 때문이다.

강제성 표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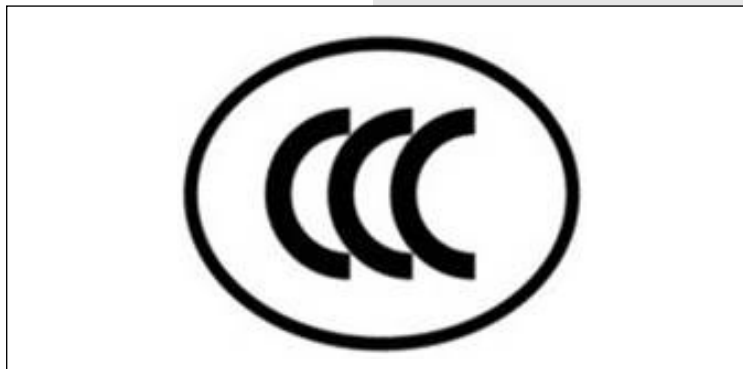
- ① 의약품 표준, 식품위생 표준, 동물용 약품 표준
- ② 제품 및 제품 제조·보존·운송과 사용 중 안전, 위생 표준, 노동안전과 위생표준, 운송안전표준
- ③ 건설공사 품질·안전·위생표준 및 국가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사 건설 기준
- ④ 환경오염물질 배출 표준과 친환경제품 표준
- ⑤ 중요한 통용 기술용어, 부호, 코드 및 도면제작방법
- ⑥ 통용 실험·검사 방법 표준
- ⑦ 상호교환·배합 표준
- ⑧ 국가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제품 품질 표준

IV. 인증마크의 표기

1. CCC 마크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제조(또는 수입)업체가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성 인증 적용범위의 제품은 강제성 인

[그림 4] 기본 CCC 인증마크







(자료원 :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증을 통과해야만 판매유통이 허용된다. 이때 인증은 강제적용 여부에 따라 강제성 인증과 자율(추천)성 인증 등 2가지로 나뉜다.

강제성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안전, 동물·식품 생명안전, 국가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법률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제품합격평가제도이다. 중국 정부는 강제성 인증을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 목록을 제정하고 해당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강제성 검사·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품이 인증을 거쳐 합격 판정을 받으면 인증표식을 부착해야 하며 인증표식을 부착한 상품만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이 허용된다.

중국의 강제성 인증 대상제품은 전선 및 전기회로제품, 일부

[표 2] CCC 인증마크 유형

구분	안전 (CCC+S)	전자파 (CCC+EMC)	소방 (CCC+F)	안전과 전자파 (CCC+S&E)
마크				
상품 예	감시카메라, 아동용 카시트, 타이어	전동공구, 가전제품, 오디오, 정보기술설비, 조명기기	화재경보설비, 소화기, 소방통신설비	차량용 전기안전기기

[자료원 :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가전, 자동차 및 부품, 완구, 안전제품, 의료기기, 소방용품, 인테리어 자재 등으로, 최근 아동용 카시트, 유아용 매트 등 유아용품들도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품목으로 지정됐다.

CCC 인증 대상품목에는 전기선 케이블,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저압 전자제품, 소형 전자모터, 장식용·인테리어 제품, 전동기구, 정보기술장비, 조명기기, 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오디오·비디오 설비,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강화유리, 농기구, 통신단말제품, 소방제품, 방범제품, 무선제품, 전기 용접기, 완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등 22개 유형이 있다.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 중 특수 품

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가장 기본적인 CCC인증 마크를 표시·부착해야 하고, 강화유리 등 제품은 기본 CC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국외에서 생산돼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반드시 수입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CC 인증마크는 구체적 제품에 따라 다르며 4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인증제품은 CCC 기본마크에 ‘S’를 추가 표시하고, 전자파 인증제품은 ‘EMC’를, 소방제품인증은

‘F’를, 안전과 전자파 인증제품은 ‘S&E’를 CCC 오른쪽에 작게 추가 표시한다.

2. 자율(추천)성 인증

자율(추천)성 인증은 필수사항이 아닌 자율 선택으로, 강제성 인증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자율(추천)성 인증제도가 존재한다. 주로 제조업체들이 제품 품질, 신뢰성이 높음을 증명하고 판매량 확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신청한다.

[그림 5] 자율성 인증 마크



[자료원 :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그림 6] 생산허가증 양식과 생산허가증 명시 사례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재구성]

3. 생산허가마크

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제품은 해당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식과 코드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공업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인신·재산안전에 위험이 있는 제품, 금융안전 및 통신 품질과 안전과 관련된 제품,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제품, 생산안전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제정한 생산허가제도

제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제품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생산허가증 표식은 ‘QS(제조기업의 제품생산허가 중국어 병음 (Qiyechanpin Shengchanxuke)의 약자)’ 및 ‘생산허가(한자)’로 구성된다. 일부 제조기업이 ‘목록’ 중 제품 생산을 제3자에 위탁했을 경우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위탁 기업의 명칭, 주소, 위탁선기업의 명칭, 주소 및 생산허가증표식과 코드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위탁기업이 위탁가공대상제품의 생산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 표식과 코드번호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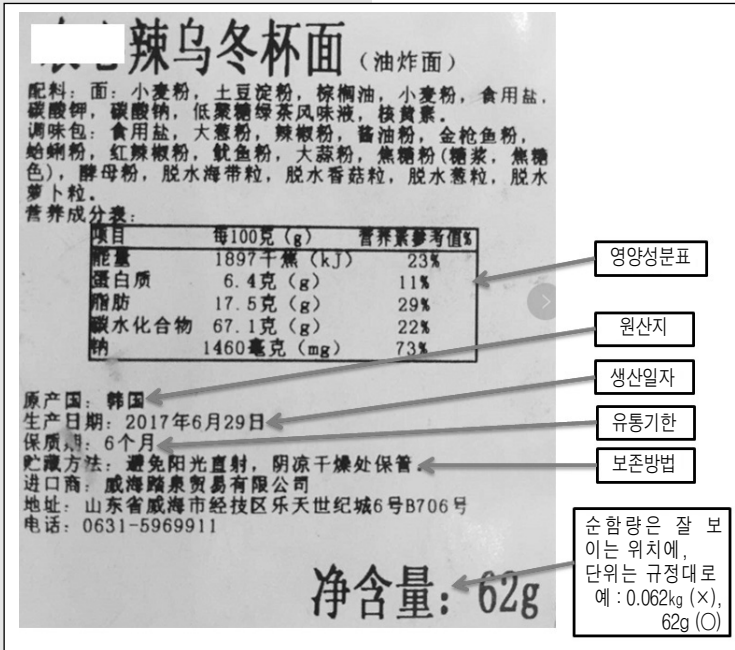
V. 품목별 라벨

1. 식품 라벨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 강화 기조로 인해 식품라벨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포장식품은 라벨에 식품 명칭, 원료배합표, 순함량, 규격, 제조자 및 판매업체 명칭, 주소, 연락처, 제조일자, 품질보증기한, 보존조건과 방법, 식품

[그림 7] 식품(라면) 중문 라벨 예시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생산허가증번호, 제품기준 코드 번호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정량 포장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함량(淨含量)'을 잘 보이게,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위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특수식품, 예컨대 특별선식과 영유아에 대해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분유와 보조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라벨 및 설명서에 복용할 수 있는 사람, 복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 기능성 성

분 또는 대표성분 및 그 함유량을 나열하고 '본 제품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문구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예방, 치료효과를 명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히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에는 제품명, 성분표, 영양성분표, 원산지, 순함량 또는 제품규격, 생산일자·유통기한, 생산기업·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정보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중문라벨은 반드시 대중국 수출 전 부착해야 하는데, 중문라벨 미 부착 분유는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생태모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고,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금지된다.

영양성분표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유아조제분유 GB 10765, GB 10767 및 식품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을 명시해야 하고, 제품등록번호(國食注字YPXXXXXXX)도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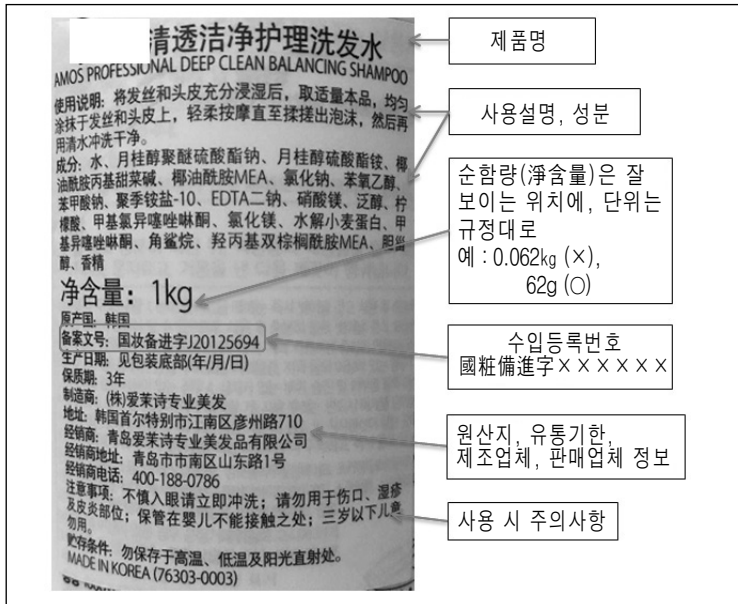
기타 필수 기재해야 하는 문구나 설명. 예컨대 '0~6개월 영아의 가장 이상적인 식품은 모유이며, 모유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6개월 이상 제품의 경우 '기타 보조식품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2. 화장품 라벨

화장품 라벨은 사용자(남성용, 유아용 등), 컬러, 향 등 정보는 제품명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중문라벨의 한자는 중국에 상표출원된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중문 간체자를 사용해야 한다.

과장광고, 과다광고, 동류 제품을 비하하는 내용, 의료작용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고, 제품규격은

[그림 8] (수입)화장품 라벨 예시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최소 포장단위와 최종 판매단위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제품 포장(용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20cm² 이상일 경우 화장품표시 중 강제표시내용의 글자 높이는 1.8mm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 포장(용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10cm² 이하이자 순함량이 15g

또는 15ml일 경우, 제품명·생산업체명 및 주소·순함량·생산일자·유통기한 혹은 생산로트번호와 사용기한만 표기할 수 있다. 수입화장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수입등록번호(國粧備進字)'를 명시해야 하며, 라벨에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알아보기 쉽게

[그림 9] 특수약품 표시법



(자료원 : 바이두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제작한 설명서를 별도로 동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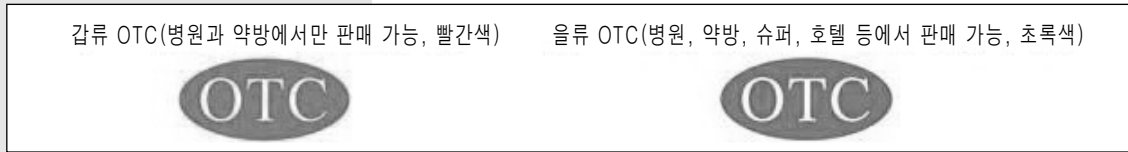
3. 의약품 라벨

‘의약품 관리법’과 ‘의약품 설명서 라벨 관리 규정’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고 설명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에는 의약품 명칭, 성분, 규격, 제조자, 인허가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일자, 유효기간, 적용증상 또는 주치기능, 용법, 용량, 금기사항,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적용증상 또는 주치기능이 규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짓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 성분의 함유량은 국가 의약품 기준을 부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변경했거나, 생산로트번호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변경했을 경우 모두 불량품으로 판정된다.



특히 의약품 포장은 의약품 품질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운송·보존에 쓰일 포장 라벨에는 의약품 통칭, 규정, 보존·생산일자, 생산로트번호, 유효기간, 인허가 증명번호, 제조자 등 정보를 명시해야

[그림 10] 비처방약품 표시법



[자료원 : 바이두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표 3]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포함 관련 표시법

마크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친환경제품에 해당 - 폐기 후 순환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전자제품은 일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환경보호사용기한(도형 속 수자는 안전사용기한을 의미) 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자료원 :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함하고, 마취류 의약품·항정신성 의약품·의료용 독성 의약품·방사성 의약품·외용 의약품은 모두 규정대로 표식을 부착, 인쇄해야 한다.

한편 비처방성 의약품 라벨에는 그 판매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전기·전자제품 라벨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표시가 관건이다.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은 통신설비, 라디오TV 설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및 기타 사무용품, 가정용 전기·전자설비, 전자계측기, 농업용 전기·전자제품, 전동공구, 의료용 전자설비 및 기기, 조명기가, 문화·교육·공예·미술·오락용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이 함유한 유해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의 명칭, 함유량, 소재부품 및 그 제품의 재이용 가능 여부, 부적절 사용(취급) 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 등 정보,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Ⅵ. 재활용 마크

1. 플라스틱제품 재활용 마크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원자재를 구분하고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표 4]와 같은 표식마크로 구분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는 강제성이 아닌 ‘권장 사항’이다.

2. 기타 재활용 마크

생태환경보호, 자원절약, 국민경제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기에 [표 5]와 같은 마크를 부착하거나 표식을 인쇄할 것을

[표 4] 플라스틱 순환재이용 마크

연번	표식 명칭	마크	적용범위
1	중복사용 가능		여러 차례 중복 사용할 수 있으며 기능은 관련 요구를 만족시키는 플라스틱
2	순환사용 가능		폐기 후 회수해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재가공사용이 가능
3	순환사용 불가		폐기 후 회수해 이용할 수 없음.
4	재생성 플라스틱		불합격 제품, 자투리 자료로 재가공한 제품
5	회수 재가공 이용 플라스틱		폐기한 공업플라스틱으로 재가공한 제품
6	의료용 플라스틱		의료용으로 사용
7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식품포장에 사용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표 5] 순환이용표시법

자재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회수 마크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권장하고 있다. 이 또한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 ‘권장성’이다.

VII.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제품표식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년 만에 개정된 ‘표준화법(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은 국가표

준과 인증제도의 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의 표준 제정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모두 중국 각종 상품의 제품표식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상품표식규제가 다르므로 관련 규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엔젤상품(영유아용품), 건강식품 등 식품류, 화장품, 소형가전 등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대중수출품목 모두 상품표식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엔젤상품, 식품의 품질 안전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해당 품목 대중국 수출시 각별히 유의해야만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환경보호 기조를 염두에 두고 포장(재료)의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